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84
----------	-------

발의연월일 : 2025. 12. 29.
발의자 : 박정 · 이학영 · 정일영
최혁진 · 김재원 · 김예지
한정애 · 박지원 · 김현정
박균택 · 황명선 · 허종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반려동물 유통 구조는 번식장, 경매장, 알선 · 중개업, 팻숍으로
이어지는 공장식 대량유통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재고
· 물량’ 중심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과잉 생산과 폐기, 불법 살처분, 유기동물 증가, 무허가
번식장의 명의 도용과 불법 세탁, 유전병 · 질병 · 사회화 결여 개체의
유통 등 구조적 동물학대가 반복 · 심화되고 있음. 또한 생산자인 농민
· 번식업자는 중간유통 수수료와 가격 구조에 종속되어 사실상 피해
를 보고,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이 동물학대 구조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움.

이에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고, 반려동물 생산 · 유통 · 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동물 경매, 알선 및 중개 등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부터 제18호, 제10조제5항 제5호, 제69조제3항,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신설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동물생산업”이란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5. “동물수입업”이란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6. “동물판매업”이란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경매, 알선 또는 중개는 제외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17. “동물장묘업”이란 반려동물의 사체를 장례, 화장, 봉안, 수목장 등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18. “생산자”란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제69조의 2제1항에 따른 자격검증을 거친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의 경매 또는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행위

제6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69조의2에 따른 생산자 자격검증을 거쳐야 한다.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동물생산업자의 자격요건) ① 제69조제1항제1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의3(생산자의 자격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우

5. 영리를 목적으로 구매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알선
· 유인하거나 강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4(명의대여 금지 등) ① 제69조의2에 따른 자격검증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생산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생산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제4항제1호 중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하지”를 “판매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것”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한 상태에서 판매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물을 전달할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것

제97조제3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6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자의 명칭을 사용한 자

4의3.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생산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생산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4의4.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한 자

6. 제10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경매,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약)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13. (현행과 같음) <u>14. “동물생산업”이란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u> <u>15. “동물수입업”이란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u> <u>16. “동물판매업”이란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경매, 알선 또는 중개는 제외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u> <u>17. “동물장묘업”이란 반려동물의 사체를 장례, 화장, 봉안, 수목장 등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u> <u>18. “생산자”란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 검증을 거친 사람을 말한다.</u>
<u><신 설></u>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 ④ (생 약)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신 설>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생 략)

<신 설>

-----.

1. ~ 4. (현행과 같음)

5.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의 경매 또는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행위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만, 제1항제1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69조의2에 따른 생산자 자격검증을 거쳐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69조의2(동물생산업자의 자격 요건) ① 제69조제1항제1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

항에 따른 심사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69조의3(생산자의 자격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구매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

<p><u><신 설></u></p> <p>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③ (생 략) ④ 동물판매업자(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p>	<p><u>록 알선·유인하거나 강요한 경우</u></p> <p><u>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p> <p><u>제69조의4(명의대여 금지 등) ①</u> <u>제69조의2에 따른 자격검증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생산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u></p> <p><u>② 생산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6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을 대여하여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p>
--	---

한다.

1.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 · 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것

2.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것

<신 설>

⑤ · ⑥ (생 략)

제97조(벌칙)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

1. -----
-----판매하지-----

2. -----판매하는 경 우 구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한 상태에서 판매 할 것

3. 동물을 전달할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것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6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자의 명칭을 사용한 자

4의3.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생산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생

<p><u><신 설></u></p> <p>5. ~ 10. (생 략)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5. (생 략)</p> <p><u><신 설></u></p> <p><u>6. ~ 12. (생 략)</u> ⑥ (생 략)</p>	<p><u>산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 받은 자</u></p> <p><u>4의4.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한 자</u></p> <p>5. ~ 10.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제10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경매,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한 자</u></p> <p><u>7. ~ 13. (현행 제6호 ~ 제12호와 같음)</u> ⑥ (현행과 같음)</p>
---	--